

인니, 할랄 인증 의무화 적용기간 조정 발표('28.10.18일부)

2026. 10. 20.
자카르타 무역관
글로벌사우스트
통상협력팀

- ◆ 인도네시아 정부는 '26.10.16일 정부령 제42호/2024 개정 방침을 발표, 당초 '26.10.18일 적용 예정이던 일부 품목의 할랄 인증 의무 적용 시점을 '28.10.18일로 2년 연기
- ◆ 화장품, 건강보조식품, 의류·생활용품, A등급 의료기기와 수입 식품·음료 등 우리 주요 소비재 수출품 대부분이 대상이며, 수입 할랄제품의 사전 적합성 확인을 규정한 할랄제품보장청(BPJPH) 규정 제4호/2026^(26.8월 발표)도 폐지 예정
- ◆ 다만 의무화 방침은 유지되고 개정 정부령 최종 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, 우리기업은 연장 기간을 활용한 인증 준비와 국내 인증기관의 상호인정협정 유효기간 확인 필요

I. 배경 및 경과

□ 추진 배경

- 인니 정부, 할랄 생태계가 의무화에 대비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
 - (사업자) 할랄 의무화 대상이 수백만 사업자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으나, 현재 사업자의 인증 준비가 불충분한 상황
 - (인증기관) 할랄 검사기관(LPH), 할랄 인증 지원 인력(P3H), 해외 할랄 인증기관(LHLN) 등 인증을 뒷받침할 기관·인력의 준비 부족

<인니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개요>

- (법적 근거) 할랄제품보장법(법률 제33호/2014, 법률 제6호/2023으로 개정)이 의무화의 근거이며, 품목별 적용 대상과 시행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(정부령 제42호/2024('24.10.17.제정)에서 규정
- (인증 의무) 인도네시아로 유입·유통·거래되는 제품은 할랄 인증이 의무이며, 비할랄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'비할랄' 표시를 해야 함(표시 방식은 BPJPH 규정 제3호/2026)
- (운영 체계) 검사기관(LPH)이 원료·공정을 검사하고 울라마협의회(MUI) 등이 할랄 여부를 판정 하면, 할랄제품보장청(BPJPH)이 인증서를 발급(해외 인증기관 인정 및 MRA 체결도 BPJPH 소관)

□ 추진 경과

- (기존 경과) 할랄제품보장법 제정('14.10.17.) → 품목별 적용 개시(식품·음료 '19.10.18일부, 비식품 '21.10.18일부) → 대·중견기업 식품·음료 의무 적용('24.10.18일부)
- (이번 조치) 일부 품목의 할랄 인증의무 적용 시점을 '28.10.18일로 2년 연기

- 영세·소기업의 식품·음료 및 수입 식품·음료와, 화장품·건강보조 식품·생활용품 등 비식품이 대상
- '26.10.16일 인니 정부는 관계 부처, 할랄제품보장청(BPJPH), 재계·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열고, 이런 일정 조정 방침을 발표
- 상기 제품은 '24년 이미 할랄 인증 의무화 적용이 연기된 바 있음.

II. 주요 내용

□ 식품·음료 분야(정부령 제160조 개정)

- (영세·소기업) 국내 영세·소기업의 식품·음료·도축제품·도축서비스 등의 할랄 인증 의무 적용 시점을 '28.10.18일로 2년 연기
- (해외 수입품)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·음료·도축제품, 도축서비스도 '28.10.18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 적용
 - * 기존 정부령은 수입품에 대한 적용 시점을 '26.10.17일까지 정하도록만 규정했음
- (서비스업) 식품·음료·도축제품을 가공·판매·유통하는 등의 서비스업에도 '28.10.18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 적용

<식품·음료 분야 할랄 인증 의무 적용 시점 변경 (제160조)>

적용 대상	기존 시행일	변경 시행일	개정 조항
국내 영세·소기업의 식품·음료·도축제품·도축서비스	'26.10.18.	'28.10.18.	제2항 개정
해외 수입 식품·음료·도축제품·도축서비스	미정 ('26.10.17까지 결정 예정)	'28.10.18.	제3항 개정
식품·음료·도축제품 관련 가공·판매·유통 등 서비스업	신설	'28.10.18.	제1a항 신설
국내 대중견기기업의 식품·음료·도축제품·도축서비스	'24.10.18.	변경 없음	제1항 유지

주: 제1a항 번호는 10.16 관계기관 회의자료 기준으로, 개정본 공포 시 확인 필요

자료원 : 인도네시아 정부령 제42호/2024 제160조, 경제조정부 보도자료('26.10.16.)

□ 非식품 분야(정부령 제161조 개정)

- (연기품목) 천연의약품, 건강보조식품, 화장품, 화학제품, 의류·생활용품, A등급 의료기기등의 할랄 인증 의무 적용 시점을 '28.10.18일로 2년 연기
- (유지품목) 일반의약품·B등급 의료기기전문의약품 및 B·C등급 의료기기 등은 기존 시행일 유지

<非식품 분야 할랄 인증 의무 적용 시점 변경 (제161조)>

적용 품목	기존 시행일	변경 시행일	조항
천연의약품·준의약품·건강보조식품	'26.10.18.	'28.10.18.	a호
일반의약품·제한적 일반의약품	'29.10.18.	변경 없음	b호
전문의약품(항정신성의약품 제외)	'34.10.18.	변경 없음	c호
화장품·화학제품·유전자변형제품	'26.10.18.	'28.10.18.	d호
의류·모자·액세서리 등 착용 제품	'26.10.18.	'28.10.18.	e호
가정용 보건용품·가정용 기기·종교용품·문구류·사무용품 등	'26.10.18.	'28.10.18.	f호
A등급 의료기기	'26.10.18.	'28.10.18.	g호
B등급 의료기기	'29.10.18.	변경 없음	h호
C등급 의료기기	'34.10.18.	변경 없음	i호
비할랄 원료·공정을 사용하는 의약품·생물학적 제제·의료기기	별도 시행일 미규정	개정사항 미발표	j호

주 : 제161조에 관한 발표는 국내산·수입산의 시행일을 구분하지 않음

자료원 : 인도네시아 정부령 제42호/2024 제161조, 경제조정부 보도자료('26.10.16.)

□ 수입 절차 분야(BPJPH 규정 제4호)

- 수입제품 적합성 확인 규정(BPJPH 규정 제4호/2026) 폐지 추진
 - 정부령 개정에 맞춘 하위 규정 정비의 일환으로, '26.8월 제정, 9월 시행된 지 약 1개월 만에 폐지 추진

<폐지 예정인 BPJPH 규정 제4호/2026 개요>

- (규정 개요) 해외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수입제품이 반입되기 전, 선적국원산지에서 지정 검사기관이 서류 검증 및 제한적 실물 검사를 실시하고 할랄제품 확인보고서(LPPH)를 발급하는 제도
- (적용 범위) 식품음료, 의약품, 화장품, 화학제품, 생물학적 제제, 유전자변형제품, 생활용품 등

- 규정 폐지 이후 수입제품 확인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직 미발표
 - 동 규정 세부 운영지침(BPJPH 청장 결정문 제328호/2026)도 함께 폐지되는지, 폐지 전 수입분에 과도기 조치가 적용되는지 미발표
 - 수입제품 전 확인 절차(할랄제품 적합성 확인보고서(LPPH) 발급)가 완전히 없어지는지, 다른 절차로 대체되는지 후속 발표 확인 필요

III. 현지 언론 및 업계 반응

- 현지 언론은 이번 시행기한 연장을 산업계와 인증기관의 준비 상황을 고려한 정책 조정으로 보도
 - (Bisnis Indonesia) 할랄 검사기관(LPH), 할랄 인증 지원 인력(P3H), 해외 할랄 인증기관(LHLN) 등의 준비 상황이 정책 조정의 고려 사항이었다고 보도
 - (Antara) 수입품은 상호인정협정(MRA) 체결 상황을 고려해 시행하며, BPJPH 규정 제4호/2026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전달
- 수입업계는 정부의 단계적 시행 방침에 긍정적 반응, 할랄 검사기관은 유예기간에 인증 준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
 - (인니 수입업자협회(GINSI)) 협회 부회장은 수입 제품의 할랄 인증이 소비자 보호 및 법적 확실성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라며, 정부의 할랄 인증 의무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
- 검사기관은 기한이 연장됐더라도 인증 준비를 미루지 말 것을 당부
 - (LPPOM) 할랄 검사기관 LPPOM 대표는 기업별 인증 준비 수준이 상이한 만큼, 유예기간을 활용해 제품별 인증 요건과 검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생산공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

IV. 우리 기업 시사점

□ 인증 준비기간 확보

- 화장품, 건강보조식품, 의류, 생활용품 및 A등급 의료기기 등 관련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시행일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- 이미 인증 의무가 적용 중인 품목과 기존 적용 일정이 유지되는 품목도 있어, 수출 제품의 세부 분류 및 적용 시점을 확인 필요

□ 수입절차 변경 점검

- BPJPH 규정 제4호/2026의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수입 제품 적합성 확인 및 LPPH 발급 절차에 관한 후속 규정 확인 필요
- 특히 기존 BPJPH 청장 결정문 제328호/2026의 후속 처리와 수입 제품에 적용되는 별도 검사·인증 절차의 변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

□ 해외 인증 인정 체계 확인 필요

- 수입 식품·음료 등에 대한 의무화 시행일이 연장되더라도 해외 할랄 인증서의 상호인정협정 상황을 고려한다는 방침은 유지
- 우리 기업은 현지 수입·유통 파트너와 협의해 한국 할랄 인증기관의 BPJPH 인정 여부, 상호 인정 범위 및 필요한 인증 서류를 사전 확인 필요

< 실무 대응 Tip >

- 자사 수출품이 제160조·제161조 중 어느 조항·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품목별 의무 적용 시점 정리
- 현지 수입·유통 파트너와 국내 인증기관 인증서의 BPJPH 인정 여부 및 인정 품목 범위 사전 확인
- 개정 정부령 공포 전까지 통관·유통 단계의 적용 기준을 현지 파트너를 통해 점검
- 인증 소요기간(6개월 이상)을 고려해 '28년 시행 이전에 여유 있게 인증 취득 일정 수립

IV. 향후 일정

- (개정령 공포) 이번 조치는 개정 정부령이 공포된 뒤 확정되며, 공포 시점은 미정
- (의무 적용) 연기 대상 품목은 '28.10.18일, 일반 전문의약품 등은 '29'34년부터 적용

<할랄 인증 의무화 관련 향후 일정>

향후 일정	내용
미정	정부령 제42호/2024 개정본 공포(최종 조문·시행일 확정)
미정	BPJPH 규정 제4호/2026 폐지 및 하위 규정 정비
'28.10.18.	영세·소기업 식품·음료, 수입 식품·음료, 식음료 관련 서비스업, 화장품·건강보조식품·생활용품·A등급 의료기기 등 의무 적용
'29.10.18.	일반의약품, B등급 의료기기 의무 적용
'34.10.18.	전문 의약품, C등급 의료기기 의무 적용

자료원 :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보도자료('26.10.16.)